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8월 30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8월 30일

3. 제안이유

-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4.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분납 대상을 "천재, 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발생 경우" 와 "주택개량채개발시 도시재개발

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고 (제22조)

-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조정하며(제23조제2항)
-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15%로 인하하고 (제28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상 존치가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5. 검토의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지대부 사용자 등의 부담완화와 공유재산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존치 불필요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 으로는

도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 중 "매각"에 관한 사항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적용법 조항의 변경에 따른 자구 개정과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의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구분에 대해 "직할시 이상의 지역"을 "특별시, 직할시 지역"으로하고 시가 "3 백만원" 이하의 재산을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의 경우로 확대 하였으며

공유농경지 대부료를 현행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150 또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 또는 1,000분의 8로 1/3 수준으로 인하 조정하였고, 그 사용료의 효율에 있어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납입지연에 따른 연체효율을 년19%에서 15%이하 하였으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첨 부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